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상 차량이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계획 등의 일간신문 공고 규정 개선(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
- 주사무소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시정

- 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나. 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개선(안 제42조제1항)
- 시정조치 전용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서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
- 다. 시정조치 등의 진행상황 보고의무 개선(안 제42조제3항)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별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차량이 폐차·수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규제 완화
- 라.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규정(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통보, 조사 및 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안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을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를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제작자등의 등록신청)”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이”를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가”로, “제작자등 등록·변경”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등록증”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은”을 “자동차제작자등은”으로, “제작자등 등록·변경”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으로부터”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로, “제작자등에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제작자등에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로, “제작자등은”을 “자동차제작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을 “전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를 “통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로,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제3호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부품 수급 계획 및 우선 시정조치 대상 선정 등의 조치사항

제42조제3항 중 “보상이 완료될”을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발생,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초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한 이후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의2 중 “소유자에게”를 “소유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9조의3제2항 본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작자등은”을 “자동차제작자등은”으로, “제작자등의”를 “자동차제작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작자등에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로, “제작자등이”를 “자동차제작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라목 중 “자동차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작자등 또는”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으로부터”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로, “제작자등이”

를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을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 중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단속”을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단속”으로 한다.

제120조제5항 중 “제58조의4”를 “제58조의5”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의2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3, 제1호의5 및 제2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155조 및 제155조의2를 각각 제155조의2 및 제155조의3으로 하고,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표 4의2 주 제2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표 4의4의 제목 중 “(제30조의2제1항 관련)”을 “(제30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라목 중 “제작자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제작자등 등록증”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제작자등록”을 각각 “부품제작자등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을 “자동차리콜센터”로 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5서식 제1호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6서식 제1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7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원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등록목적		[] 판매목적 [] 자가사용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		[] 완성자동차 [] 미완성자동차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종류	규모		
	[] 승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화물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특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이륜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실적)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잃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외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u>		<u>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u>		
<u>제작자등 등록 등</u>		<u>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u>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		제31조(자기인증 기준) -----		
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		-----		
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		-----		
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		-----		
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		-----		
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		-----		
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 ·		-----		
조립 또는 <u>수입하려는 자(이하</u>		----- <u>수입(이하 “제작등”이</u>		
<u>“제작자등”이라 한다)</u> 는 법 제3		<u>라 한다)하려는 자</u> -----		
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		
형식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		-----		
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		-----		
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		
한다)해야 한다.		-----.		

제32조(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7.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가 -----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 -----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동차제작자등 -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2.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 자동차제

작자등 등록증-----.

1. 2.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증-----.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 -----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 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

-----.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 ----

---- 자동차제작자등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 자동차제작자등 ----
-----.

1. ----

----- 자동차제작자등 ----

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
립 가능한지 여부

2. 3. (생략)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제작자
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
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
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
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
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
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2. 3. (현행과 같음)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동차
제작자등-----

-----.

⑤-----

----- 자동차제작자등-----
-----.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 자
동차제작자등-----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
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
받은 제작자등은 직접 안전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
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
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
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
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
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
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작자등이 직접 계속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동차제작자등-----

-----.

④ 자동차제작자등-----

-----.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
동차제작자등-----

-----.

----- 자동차제작자등-----

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제작자등

③ 제37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39조(제원의 통보) ①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

1. (현행과 같음)

2. -----

-- 자동차제작자등

③ -----
----- 자동차제작자등-----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제원의 통보) ① 자동차
제작자등-----

-----.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
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
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
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
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
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
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제작자등
로부터 -----

----- 자동차제작자등
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 -----
----- 자동차제
작자등-----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의2(자기인증 적합조사의 시행) ① (생략)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 적합조사 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보상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동차제작자등-----.

제40조의2(자기인증 적합조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 자동차제작자등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자동차제작자등-----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
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1조(제작결합 등의 공개 및 시
정조치 등) ① (생 략)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
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국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① --

-----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
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
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
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
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
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
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
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
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
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

----- 통지
하고,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제작
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
-----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
-----.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

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
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② ~ ⑥ (생략)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
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
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
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 6. (생략)

② (생략)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
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
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부
품 수급 계획 및 우선 시정조
치 대상 선정 등의 조치사항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상

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
해야 하며, 시정조치 또는 경제
적 보상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
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
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
된 소유자의 이름·주소·휴대
전화번호·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

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
할 -----

-- 보고

다만, 화재 발생,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초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한 이후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

----- 소유자에 대한

게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 자동차제작자등-----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
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
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
험”이라 한다)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 제
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
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
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
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
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
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
의 공급기간 등) ① (생략)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
인력) ① 자동차제작자등-----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
의 공급기간 등) ① (현행과 같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음)

② 자동차제작자등-----

-----.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

----- 자동차제작자등의 -----

----- 자동차제작자등 -----

-----.

④ -----
----- 자
동차제작자등-----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

-----.

⑤ -----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
-- 자동차제작자등이 -----

-----.

⑥ -----

----- 자동차제작자등-----

-----.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
----- 자동차제작자등-----

-----.

② 자동차제작자등-----

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
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
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
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
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
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
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
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
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
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
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
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자동차
제작자등-----

③ 자동차제작자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제작자등-----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1. ~ 5. (생략)

③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51조(자료의 보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 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

-----.

1. ~ 5.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제작자등-----

-----.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 자등 또는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제작자등-----

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
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
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
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
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
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
합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 다. (생략)

라.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부
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
비 및 교환 내역

5. ~ 8. (생략)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
작 결함 시정 내용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

가. 자동차제작자등-----

나. 자동차제작자등-----

4.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동차제작자등 -----

5. ~ 8. (현행과 같음)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제
작자등 또는 -----

-----.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④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 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

⑤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⑥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

-----.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 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

---- 자동차제작자등-----

-----.

②-----

----- 자
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

---- 자동차제작자등이 -----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

2.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생략)

1. (생략)

2.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단속

② (생략)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

-- 자동차제작자등 -----

1. ----- 자동차제작자등 -----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 -----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58조의5 -----

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⑦ (생략)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②
~ ④ (생략)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
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
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
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
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⑥ (생략)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
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5. (생략)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9
조제6항-----

⑥ (현행과 같음)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u>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u> 에 관한 업무 5의3. ~ 9. (생략) ②・③ (생략)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 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u>제작자등의</u>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 발급 신청 1의2. (생략) 1의3. 제36조제1항에 따른 <u>제작</u> <u>자등의</u> 기술검토신청서의 제 출 1의4. (생략) 1의5. 제39조제1항에 따른 <u>제작</u> <u>자등의</u> 제원통보서 제출 2. 제42조제3항에 따른 <u>제작자</u> <u>등의</u>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 7. (생략) <신설>	<u>자동차제작자등</u>----- ----- 5의3.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 산처리) ① ----- ----- ----- ----- -----. 1. ----- <u>자동차제작자</u> <u>등</u>-----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u>자동</u> <u>차제작자등</u>-----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 <u>자동</u> <u>차제작자등</u>----- 2. ----- <u>자동차제</u> <u>작자등</u>-----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155조(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 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
---	--

<u><신 설></u>	<u>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u> <u>1. 기본 모니터링: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u>
<u><신 설></u>	<u>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의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u>
<u><신 설></u>	<u>②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u>
<u><신 설></u>	<u>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u>
<u><신 설></u>	

<신 설>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신 설>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신 설>

2.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u><신 설></u> <u>제155조 · 제155조의2</u> (생략)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2. (생략) 3. 제32조에 따른 <u>제작자등의</u> 등록신청 4. (생략) 5. 제39조에 따른 <u>제작자등의</u> 제원의 통보 6. ~ 21. (생략) ② (생략)	<u>한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55조의2 · 제155조의3</u> (현행 제155조 및 제155조의2와 같음)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자동차제작자</u> <u>등</u>----- 4. (현행과 같음) 5. ----- <u>자동차제작자</u> <u>등</u>----- 6.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4